

서울특별시 조례 “건설기술자” 등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

(남창진 의원 발의)

의안 번호	773
----------	-----

발 의 년 월 일: 2023년 05월 30일

발 의 자: 남창진 의원(1명)

찬 성 자: 강석주, 경기문, 고광민, 곽향기, 구미경, 김규남, 김길영, 김동욱, 김영옥, 김영철, 김용일, 김용호, 김재진, 김지향, 김태수, 김형재, 김혜영, 김혜지, 남궁역, 문성호, 박상혁, 박·석, 박성연, 박영한, 박춘선, 서상열, 소영철, 송경택, 신복자, 심미경, 옥재은, 유만희, 유정인, 유정희, 윤기섭, 윤영희, 윤종복, 이병윤, 이상욱, 이숙자, 이종태, 임춘대, 장태용, 최민규, 최호정, 허·훈, 홍국표, 황철규 의원(48명)

1. 제안이유

- 「건설산업기본법」 등의 개정으로 “건설기술자”는 “건설기술인”으로 “건설업자”는 “건설사업자” 등으로 순화된 용어를 서울시 관련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조례에 기존 사용하던 용어인 “건설기술자”는 “건설기술인”으로 “건설업자”는 “건설사업자” 등으로 변경함.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 진흥법」

다. 기타 : 해당없음

서울특별시 조례 “건설기술자” 등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조례의 “건설기술자” 등 건설 관련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용어에 대한 일괄정비를 통해 법적 안정성과 효율성을 도모함으로써 자치법규 접근성을 개선하고, 이를 통해 시민의 권익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서울특별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중 “건설업자”를 각각 “건설사업자”로 한다.

제3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 중 “건설업자”를 각각 “건설사업자”로 하고, 같은 항 중 “건설기술자(이하 “건설사업관리기술자”라 한다)”를 “건설기술인(이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라 한다)”로,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로 한다.

제8조 중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한다.

제10조제6항 및 제11조제8항 중 “건설사업관리기술자와”를 각각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로 한다.

제16조 중 “건설업자”를 각각 “건설사업자”로 한다.

제3조(「서울특별시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 한다.

제4조(「서울특별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관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호 중 “건설기술자 중 고급기술자”를 “건설기술인 중 고급기술인”으로 한다.

제8조제6항제1호 중 “건설기술자 중 특급기술자”를 “건설기술인 중 특급기술인”으로 한다.

제5조(「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지역중소건설업자”를 “지역중소건설사업자”로, “건설업자”를 “건설업을 하는 자”로 한다.

제4조제2항제4호 중 “지역중소건설업자”를 “지역중소건설사업자”로 한다.

제5조제1항 및 제2항 중 “지역중소건설업자”를 각각 “지역중소건설사업자”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지역 중소건설업자”를 “지역중소건설사업자”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